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642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1.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C

2. 주식회사 D

3. 주식회사 E

변론 종결 2024. 10. 29.

판결 선고 2024. 11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,

가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제1호 5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8.23m²를 인도하고,

나. 10,7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2024. 6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54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 2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)

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안홍준

별지

1)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'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'은 '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'로 간주한다.

2)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24. 10. 29.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월 차임 2회분 3,080,000원을 추가 청구하고 있으나, 주문에서 이미 2024. 6월분 부터의 월 차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, 피고 사이 정산할 문제로 보인다.